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49 발의연월일: 2025. 3. 5.

발 의 자: 박상웅・박정하・윤한홍

김미애 • 박덕흠 • 이상휘

김민전 · 강승규 · 송석준

김재섭 · 신동욱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시·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하는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·운용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. 이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인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

계하여 시·도기본계획 및 시·군·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 중 조례로 정하는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·도기본계획 및 시·군·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)	제20조(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)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기	
본계획 및 시・군・구기본계획	
을 수립할 때에는 「지방자치	
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	
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	
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	
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	
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후단	<u>이 경우</u>
<u>신설></u>	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
	는 지원금 중 조례로 정하는
	일정 비율 이상은 보육 및 교
	육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
	<u>여야 한다.</u>